

■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규칙 [별지 제23호서식] <개정 2015.7.29.> 한국에너지공단 전자민원(www.energy.or.kr)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.

## 검사대상기기 [ ] 폐 기 신고서 [ ] 사용중지

※ [ ]에는 해당되는 곳에 √ 표를 합니다.

|          |      |         |    |
|----------|------|---------|----|
| 접수번호     | 접수일자 | 처리기간    | 즉시 |
| 성명(대표자)  |      | 사업자등록번호 |    |
| 상호 또는 명칭 |      |         |    |
| 사무소 소재지  |      | (전화번호)  |    |
| 사업소 소재지  |      | (전화번호)  |    |
| 설치장소 소재지 |      | (전화번호)  |    |

|        | 검사증번호 | 기기명(형식) | 용 량 | 검 사유효<br>기간만료일 | 폐기·중지일자 |
|--------|-------|---------|-----|----------------|---------|
| 검사대상기기 |       |         |     |                |         |
|        |       |         |     |                |         |
|        |       |         |     |                |         |
|        |       |         |     |                |         |

폐기 또는 사용중지 사유

「에너지이용 합리화법」 제39조제7항제1호·제2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1조의23에 따라 위와 같이 검사대상기기 ([ ]폐기 [ ]사용중지)를 신고합니다.

년 월 일

신고인

(서명 또는 인)

한국에너지공단이사장 귀하

|      |              |            |
|------|--------------|------------|
| 첨부서류 | 검사대상기기 설치검사증 | 수수료<br>없 음 |
|------|--------------|------------|

### 처 리 절 차

